

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농공학회(이하“학회”라 한다)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는 정관과 직제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분) 위원회는 크게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설치

제4조(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학회운영과 직결되는 주요 일상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기획·조정 및 집행을 수행하는 상설기구로서 기획운영위원회, 편찬출판위원회, 학술정보위원회, 기술정보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학문융합위원회, 정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교육개발 및 회원교류위원회를 둔다.

제5조(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농공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연구 발전과 회원 각자의 전공과 특기를 살리고 학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는 비 상설기구로서 농어촌물이용, 물안전, 물환경, 지하수, 농촌계획/지역개발, 법/정책/거버넌스, 스마트시설농업, AI/ICT/BigData, 토질/기반/토양환경, 구조재료시설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소위원회)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회장은 학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위원회의 기능

제8조(기획운영위원회) 기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래 비전 제시 및 실행계획 수립
2.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 사업계획 조정 및 예산 결산
4.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여타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9조(편찬출판위원회) 편찬출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논문집 및 학회지의 편집 발간
2. 농공학 전문도서의 출판
3. 연보 및 회원명부 발간
4. 기타 논문 및 간행물의 편집·출판

제10조(학술정보위원회) 학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계획수립 및 실행
2. 학술교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행
3. 관련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협력
4. 농공학 교육인증 관련 업무

제11조(국제협력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논과 물 환경 국제학회(PAWEES) 관련 국제심포지엄, 국제회의 등의 계획수립 및 실행
2. 논과 물 환경 학술지(PWE) 편집, 발간
3. PAWEES 관련 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협력
4. 여타 외국 기관 및 학회 등과의 교류협력

제12조(기술정보위원회) 기술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공 신기술자료 수집 및 보급
2. 기술자 실무 교육
3. 학회지, 연구논문 및 기술 자료의 D/B 구축
4. 학회 Home page 구축 및 관리
5. 기술교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행
6.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조정 및 통괄

제13조(학문융합위원회) 학문융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공학과 타 학문 분야 간 융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행
2. 학제 간 공동연구 및 융합과제의 발굴·추진
3. 학문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학회 및 전문가와의 교류·협력

제14조(교육개발 및 회원교류위원회) 교육개발 및 회원교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공학 연구회 활동
2. 학부 및 대학원생 학회 참여 활동 장려 및 지원
3. 교육 개발에 관한 업무

제15조(대외협력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대외협력
2. 산·학 관련 협조
3. 학술발표회, 포럼, 심포지엄 등 각종행사 재정지원

제16조(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공학 관련 정책 기본계획 및 수립 등에 참여역할
2. 정부기관과 학계간의 민관 협력 기반(거버넌스) 구축
3. 농공학 중장기 비전과 전략 제시

제17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분야별 학술 및 기술의 연구
2. 전문분야별 자문 및 지도
3. 연구용역 수행

제 4 장 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인원) 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30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① 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② 회장은 상임위원회의 간사 및 위원을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이사 중에서 우선적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0조(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의 입회 결의에 의하여 선발한다.

③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출 및 선발된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 한다.

제21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호선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두지 아니하며 탈퇴 또는 2년간 위원회 활동이 없으면 제명한다.

제22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해당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은 그 위원회에 부여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위원회 활동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 학회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위원회의 운영

제23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장은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명할 수 있으며 모든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5조(위원회의 의사록)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토의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기 설치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정 2002년 8월 29일

개정 2003년 4월 26일

개정 2004년 2월 6일

개정 2005년 10월 28일

개정 2007년 10월 11일
개정 2010년 04월 15일
개정 2018년 01월 26일
개정 2022년 01월 18일
개정 2024년 08월 19일
개정 2026년 01월 15일